|  |  |  |
| --- | --- | --- |
|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  **관련문제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4년 제32호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감독관리 방법>(해관총서 령 제219호),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가공무역 부자재, 잔여자재, 불량품, 부산물, 재해보세화물에 관한 관리방법>(해관총서 령 제111호 발표, 해관총서 령 제218호 수정)에 근거하여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의 유관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는 가공무역기업이 내수판매 또는 반송 할 수 없는 부자재, 잔여자재, 불량품, 부산물 또는 재해보세화물에 대해 해관에 신고하고 법적 자질이 있는 단위에 위탁하여 소각, 매립과 기타 무해화 방식을 취해 화물의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등 특성을 변화시키는 처리활동을 지칭한다.  2. 가공무역기업은 공상 영업집조 경영범위에 열거된 폐기물 처리단위에 위탁하여 소각처리를 진행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폐기물 처리자질에 대한 특수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라야 한다.  3. 가공무역기업은 해관에 신고하여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를 진행하며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해관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 신고표(소각처리 후 수입 발생)>(첨부1 참고), <해관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 신고표(소각처리 후 수입 없음)>(첨부2 참고) 및 소각처리방안  (2) 소각처리 신고된 가공무역화물 내수판매 또는 반송 할 수 없다는 설명서  (3) 소각처리 단위의 자질증명 및 기업이 해당 단위와 체결한 위탁계약서  (4) 해관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자료.  내료가공화물의 소각처리를 신고한 경우 화물소유인의 소각성명을 같이 제출해야 하며; 불량품 소각처리를 신고한 경우 불량품 단위소모자료 및 단위소모량에 근거하여 환산된 불량품의 소모된 기 수입자재 리스트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4. 기업은 소각처리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하고 화물소각처리를 지체없이 완성하여 수책 유효기간 또는 전자장부 핵소주기 내 통관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 기업이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로 수입을 얻지 못하고 소각처리화물이 자재, 불량품인 경우 통관 적용 감독관리 방식은 “자재소각(코드 0200)”(불량품은 단위소모관계에 따라 자재로 환산하고 자재로 신고하여 진행)이며, 소각처리화물이 부자재, 부산물인 경우 통관 적용 감독관리 방식은 “부자재소각(코드 0400)”이다.  (2) 기업이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로 수입을 얻은 경우 소각처리 후의 화물 검사보고 상태에 따라 해관에 신고하며 통관 적용 감독관리 방식은 “진료 부자재 내수판매(코드 0844)” 또는 “내료 부자재 내수판매(코드 0845)”이다. 해관은 부자재 내수판매 과세의 관리규정과 비교 대조하여 과세수속을 처리한다.  통관신고서 비고란 내 “해관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 신고표 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5. 해관은 인력을 파견하여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를 감독하고 기업 및 소각처리 단위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6. 가공무역기업은 핵소 보고할 때, 해관에 <해관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 신고표>, 처리단위가 발급한 접수증,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 증명>(첨부3 참고) 및 통관신고서 등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해관은 규정에 따라 핵소수속을 처리한다.  (1) 기업이 소각처리 수입을 얻지 못한 경우 해관은 소각처리 통관증빙에 의거하여 결산 말소를 진행한다.  (2) 기업이 소각처리 수입을 획득함에 있어 소각처리화물이 부자재, 부산물인 경우 <해관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 신고표>에 열거된 화물리스트 및 통관증빙에 의거하여 말소를 진행한다.  (3) 기업이 소각처리 수입을 획득함에 있어 소각처리화물이 자재별로 수책(장부)에서 공제하는 자재, 불량품인 경우, <해관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 신고표>에 열거된 화물리스트 및 통관증빙에 따라 자재 또는 환산자재로 결산 말소를 진행한다.  7. 기업이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를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진행한다.  본 공고 내용은 2014년 5월 1일로부터 시행하며, 해관총서 공고 2009년 제56호는 동시 폐지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 1. 해관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 신고표(소각처리 후 수입 발생)  <http://www.customs.gov.cn/Portals/0/2013gg/14公告33号fj1.doc>  2. 해관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 신고표(소각처리 후 수입 없음)  <http://www.customs.gov.cn/Portals/0/2013gg/14公告33号fj2.doc>  3.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 증명  <http://www.customs.gov.cn/Portals/0/2013gg/14公告33号fj3.doc>  해관총서  2014년4월26일 |  | **关于加工贸易货物销毁处置**  **有关问题的公告**  海关总署公告2014年第33号  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加工贸易货物监管办法》（海关总署令第219号）、《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加工贸易边角料、剩余料件、残次品、副产品和受灾保税货物的管理办法》（海关总署令第111号公布，海关总署令第218号修订），现就加工贸易货物销毁处置的有关问题公告如下：  一、加工贸易货物销毁处置，是指加工贸易企业对因故无法内销或者退运的边角料、剩余料件、残次品、副产品或者受灾保税货物，向海关申报，委托具有法定资质的单位，采取焚烧、填埋和用其他无害化方式，改变货物物理、化学和生物等特性的处置活动。  二、加工贸易企业应委托工商营业执照的经营范围中列明废物处理的单位进行销毁处置；法律、行政法规对废物处置资质有特殊规定的，从其规定。  三、加工贸易企业向海关申报办理加工贸易货物销毁处置，应提交以下单证资料：  （一）《海关加工贸易货物销毁处置申报表（销毁处置后有收入）》（见附件1）、《海关加工贸易货物销毁处置申报表（销毁处置后无收入）》（见附件2）及销毁处置方案；  （二）申报销毁处置的加工贸易货物无法内销或退运的说明；  （三）销毁处置单位的资质证明，及企业与该单位签订的委托合同；  （四）海关认为需要提供的其他资料。  申报销毁处置来料加工货物的，应同时提交货物所有人的销毁声明；申报销毁处置残次品的，应同时提交残次品单耗资料以及根据单耗折算的残次品所耗用的原进口料件清单。  四、企业应明确销毁处置时限，及时完成货物销毁处置，并在手册有效期或电子账册核销周期内办理报关手续。  （一）企业销毁处置加工贸易货物未获得收入，销毁处置货物为料件、残次品的，报关适用监管方式为“料件销毁（代码0200）”（残次品按照单耗关系折成料件，以料件进行申报）；销毁处置货物为边角料、副产品的，报关适用监管方式为“边角料销毁（代码0400）”。  （二）企业销毁处置加工贸易货物获得收入的，按销毁处置后的货物报验状态向海关申报，报关适用的监管方式为“进料边角料内销（代码0844）”或“来料边角料内销（代码0845）”。海关比照边角料内销征税的管理规定办理征税手续。  报关单备注栏内应注明“海关加工贸易货物销毁处置申报表编号”。  五、海关可以派员监督销毁处置加工贸易货物，企业及销毁处置单位应当给予配合。  六、加工贸易企业报核时应当向海关提交《海关加工贸易货物销毁处置申报表》、处置单位出具的接收单据、《加工贸易货物销毁处置证明》（见附件3）及报关单等单证，海关按照规定办理核销手续。  （一）企业未获得销毁处置收入的，海关凭销毁处置报关单证进行核算核销。  （二）企业获得销毁处置收入，且销毁处置货物为边角料、副产品的，凭《海关加工贸易货物销毁处置申报表》所列明的货物清单及报关单证进行核销。  （三）企业获得销毁处置收入，且销毁处置货物为料件、残次品需按料件核扣手（账）册的，按照《海关加工贸易货物销毁处置申报表》所列明的货物清单及报关单证以料件或折料进行核算核销。  七、企业未如实申报加工贸易货物销毁处置的，海关按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和《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的有关规定进行处理。  本公告内容自2014年5月1日起施行，海关总署公告2009年第56号同时废止。  特此公告。  附件：1.海关加工贸易货物销毁处置申报表（销毁处置后有收入）  <http://www.customs.gov.cn/Portals/0/2013gg/14公告33号fj1.doc>  2.海关加工贸易货物销毁处置申报表（销毁处置后无收入）  <http://www.customs.gov.cn/Portals/0/2013gg/14公告33号fj2.doc>  3.加工贸易货物销毁处置证明  <http://www.customs.gov.cn/Portals/0/2013gg/14公告33号fj3.doc>  海关总署  2014年4月26日 |